

한방 칼럼

아토피 피부염

<지난호에서 계속됩니다.>

■ 아토피 피부염의 분류

1. 부위별 분류

전신 아토피 피부염, 얼굴 아토피 피부염, 복부, 허리 아토피 피부염, 둔부 아토피 피부염, 하체 아토피 피부염, 관절 아토피 피부염, 손발 아토피 피부염, 등·가슴 아토피 피부염, 두피 아토피 피부염

2. 증상별 분류

열성 아토피, 만성·태선화 아토피, 건성 아토피, 스트레스 아토피

■ 아토피의 치료 과정

1. **청열해독** : 아토피로 인한 과도한 열을 진정시키고 해독하는 과정

2. **소염해독** : 열이 진정된 후 피부의 발진과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

3. **체질 개선(장부기능 개선 단계)** : 신진대사 조절력을 높여 인체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저하된 특정 장부의 기능 회복을 돕는다.

4. **피부 회복** : 피부 건조, 태선화, 피부 착색 등 아토피 체질 개선 후에도 남아 있는 피부 증상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한다.

*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 급작스럽게 스테로이드 사용을 중단하면, 기능이 저하된 부신에서 스테로이드 생산을 못 하여,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악화 된다. 그러므로, 적합한 치료와 함께 서서히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여가며 치료해야 한다.

■ 음식 관리

아토피 치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음식 관리이다. 불규칙한 식생활은 아토피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재발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음식 관리가 필수적이다.

1. 피해야 하는 음식

- a. 체내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종 단백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가공식품, 육류, 알레르기 식품

b. 소화와 대사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유발하고 대사를 저해시키는 육류, 고지방식(튀김, 볶음, 트랜스 지방), 고열량 음식

c. 재배, 보관 유통, 생산, 조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게 되는 식품, 가공식품, 구운 음식

d. 체온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차가운 음식

2. 주의사항

a.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b. 식사를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시간에 한다.

c. 편식을 하지 말고, 채소, 과일 해조류 등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

d. 식사량을 조절하여, 과식과 폭식은 피한다.

e.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신다.

f.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먹지 않는다.

g. 보습제는 너무 두껍게 바르지 않고 되도록 얇게 바른다.

이큐베멜 한의원 원장 최준용
한의학 박사 LAc, Ph D
TEL (213) 598-3047
1210 S. Euclid St. #A
La Habra, CA 90631



법률 칼럼

영주권 갱신과 범죄 기록

최근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 갱신을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범죄 기록이 영주권 갱신 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영주권 갱신은 현재 본인이 영주권 자라는 것만 증명하기만 하면 별 문제 없이 갱신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 영주권 갱신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가정폭력, 아동학대, 살인, 심각한 상해 등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절차와 별개로 갱신 신청자에게 추방 재판 출두 명령서가 발부되어 추방재판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 갱신을 하는 경우, 본인이 관련된 범죄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1996년에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입국 후 (또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유기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누구나가 경/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 여부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개정 이민법이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위에 언급한 범죄가 있다면 그 범죄가 어느 시점에 저질러진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본인이 추방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범죄를 1996년 9월30일 이후에 저질렀다면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되는 범죄 (Moral Turpitude Crime)의 경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주권 갱신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범죄는 살인, 강간, 절도, 사기, 배우자 폭행, 납치, 아동학



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도덕적 흠결의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으로 실제 형량이 6월 미만이고 최고 형량이 1년 미만인 Petty Crime을 제외한 그 이상의 실제 형량과 그 이상의 최고 형량이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재판의 대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이민국 시스템상으로 여전히 영주권자입니다. 단지 본인이 영주권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영주권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갱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잘 참고해 영주권자가 된 이후 형사법적인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영주권 갱신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범법 사실이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